

# [다자녀가구 특별공급] 서류제출안내



※ 제출하시는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0.31)**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아래 서류 및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| 제출구분   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         |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통<br>서류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<br>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인감증명서 또는<br>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<br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<br>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<br>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 상세증명으로 전부 공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※ 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<br>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모두 제출   |
|                  | 해당자<br>(추가)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  |
|                  | 해당자<br>(추가) | 복무확인서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| 해당자<br>(추가) |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<br>증빙서류      | 본인 및<br>세대원       | •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<br>※ [공통①] <b>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</b>  |
|                  | 해당자<br>(추가) | 전세피해자<br>증빙서류            | 본인 및<br>세대원       | 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<br>단, 낙찰주택이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서, 주택공시가격 1억5천만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<br>※ [공통②] <b>전세피해자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</b>  |
|                  | 다자녀<br>가구   | 해당자<br>(추가)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| 직계존속  |
| 해당자<br>(추가)      |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산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<br>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  |
| 해당자<br>(추가)      |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직계비속              | • 만18세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|
| 해당자<br>(추가)      |             |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|
| 해당자<br>(추가)      |             | 임신진단서 또는<br>출생증명서        | 본인<br>또는<br>배우자   | • 태이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<br>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(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<br>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<br>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|
| 해당자<br>(추가)      |            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<br>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<br>또는<br>배우자   | 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|
| 부적격<br>당첨<br>통보자 | 해당자<br>(추가) | 무주택 소명서류                 | 해당주택              |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 화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<br>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|
|                  | 해당자<br>(추가) |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            | 해당기관              | 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|
| 대리인<br>제출시       | 필수         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  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대리인 신분증, 도장              | 대리인               | 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|